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1
----------	------

발의연월일 : 2013. 12. .  
발의자 : 전용철, 이용범, 이재병,  
홍성욱, 류수용, 최용덕,  
강병수, 권용오 의원  
(찬성자 5인)

## 1. 주 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법령에 의거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함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입규모가 축소됨
-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불가로 교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함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230개 기초단체 중 82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적인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

3. 이 송 처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안전행정부, 교육부

#### 4. 첨 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입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교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였으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2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적인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법령에 의거 사업이 불가능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다.

2013.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